

# 대법원 2018도2976

##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박상옥)은 2018. 4. 26. 피고인 이육재(전 춘천시 부시장)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**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**(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8도2976 판결)

### I. 사안의 내용

#### ■ 피고인 이육재(전 춘천시 부시장)

- 피고인 민건홍과 공모하여 피고인 권영만에게 5,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으로서 최문순 후보 지지 기부금 모집(정치자금법위반 등)
- 민건홍으로 하여금 강원일보에 5회, 강원도민일보에 4회 등 총 9회에 걸쳐 최문순 강원도지사 재선에 유리한 내용인 레고랜드 개발사업추진실적을 홍보하는 취지의 채용 광고를 게재함으로써,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(공직선거법위반)
- 민건홍으로부터 레고랜드 개발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양복, 불가리 가방 및 현금 1,000만 원, 양주 2병을 수수(뇌물수수)

#### ■ 피고인 권영만(전 강원도지사 특별보좌관)

- 민건홍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,000만 원을 기부받음(정치자금법위반)

#### ■ 피고인 민건홍(전 엘엘개발 총괄대표)

- 권영만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,000만 원 기부함(정치자금법위반)
- 피고인 이육재에게 양주 등 공여함(뇌물공여)

## II. 원심의 판단

### ■ 피고인 이욱재

-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, 벌금 100만 원, 22만 원 추징
- 정치자금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: 무죄
- 공직선거법 위반 : 무죄
- 뇌물수수 : 맞춤 양복 2벌, 양주 2병 부분 유죄, 불가리 가방 및 현금 부분 무죄

### ■ 피고인 권영만

-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7,000만 원 추징
- 정치자금법 위반 : 유죄

### ■ 피고인 민건홍

-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, 벌금 500만 원
- 정치자금법 위반 : 유죄
- 뇌물공여 : 맞춤 양복 2벌, 양주 2병 부분 유죄, 불가리 가방 및 현금 부분 무죄

## III. 대법원의 판단

### 1. 사건의 쟁점

#### ■ 피고인 이욱재의 정치자금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(검사 상고)

- ▶ 피고인 이욱재가 피고인 민건홍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(피고인 권영만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 지급)에 공모·가담하였는지
- ▶ 피고인 이욱재의 공모·가담을 인정하는 취지의 민건홍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

#### ■ 피고인 이욱재의 공직선거법 위반(검사 상고)

- ▶ 엘엘개발이 직원채용 광고를 함에 있어 레고랜드를 홍보하는 취지의 광고문구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를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

#### ■ 피고인 이욱재의 뇌물수수(쌍방 상고)

- ▶ 피고인 이욱재가 피고인 민건홍으로부터 받은 맞춤 양복과 피고인 민건홍이 결재한 양주 2병과 관련하여 그 뇌물성 및 피고인 이욱재의 고의 인정 여부
- ▶ 피고인 이욱재가 피고인 민건홍으로부터 불가리 가방과 현금 1,000만 원을 뇌물로

수수한 사실이 있는지

■ 피고인 권영만의 정치자금법 위반(피고인 상고)

- ▶ 피고인 권영만이 피고인 민건홍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·장소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,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

■ 피고인 민권홍의 뇌물공여(검사 상고)

- ▶ 피고인 민건홍이 피고인 이육재에게 불가리 가방과 현금 1,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

## 가. 판결 결과

- 상고기각(원심 확정)

## 나. 판단 근거

-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임
- 원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유·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

## 2. 판결의 의의

- 피고인 이육재(전 춘천시 부시장)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의 점(맞춤 양복 2벌, 양주 2병)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, 나머지 공소사실[정치자금법 위반, 지방공무원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부 뇌물수수(불가리 가방 및 현금 1,000만 원)의 점]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